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89호 2023. 7. 14.(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9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11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4

○ 삼척시 공고 제2023-113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 7

○ 삼척시 공고 제2023-1140호 제246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10

공 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3-99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4.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박걸남로 631-15 (조비동)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조비동 32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박걸남로 631-15 (조비동)	20230714	신규 부여	20090626	역사인물(박걸남) 이름활용 (문화재명칭)
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21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서길 86-450	20230714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방위활용
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리 166-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하정길 115	20230714	신규 부여	20230710	행정구역명사용
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하동 187-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28 (정하동)	20230714	신규 부여	20090626	동지역해안도로 (기존도로명)
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등봉동 214-1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평등길 443 (등봉동)	20230714	신규 부여	20090626	행정구역명(평전동, 등봉동)복합활용
		이	하	여	백	

삼척시 공고 제2023-111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3. 7. 10. ~ 2023. 7. 25.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3. 7. 26.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1	나.당사자	성명(명칭)	박대○
		주 소 (대장상주소)	노곡4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661번지 연면적(24.46㎡), 목조/아연, 잠실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7. 10.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969

삼척시 공고 제2023-113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삼척시 공인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인 등록 및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1일

삼 척 시 장

1. 공인 등록 및 폐기사유 : 2023. 7. 7.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2. 등록공인 최초 사용 연월일 : 2023. 7. 11.
3. 폐기공인 폐기 연월일 : 2023. 7. 11.
4. 등록 및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가. 신조

구분	공 인 명	규격(cm)	인 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분임재무관인	2×2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분임재무관인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 신조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일상경비출납원인		

구분	공 인 명	규격(cm)	인 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 신조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분임재무관인	2×2 (정방형)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나. 폐기

구분	공 인 명	규격(cm)	인 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분임재무관인	2×2 (정방형)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 폐기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구분	공 인 명	규격(cm)	인 영	등록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공인 폐기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분임재무관인	2×2 (정방형)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1.8 (정방형)			

삼척시 공고 제2023 - 1140호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246회 삼척시의회(임시회) 부의안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안건 (동의안 2건)

연번	부 의 안 건	해 당 부 서
1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폐광지역사업단
2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복 지 정 책 과

2023. 7. 12.

삼 척 시 장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7.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도계 현장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대하여 삼척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위탁사무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3.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의 5(재계약)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회동의)

□ 필요성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이 2023.6월 만료됨에 따라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도모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4. 위탁사무 내용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

5. 위탁사업 개요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현황

시설명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소재지	삼척시 도계읍 전두시장길 20, 2층(지상 전체)	
시설 규모	198.34㎡(지상 2층)	
운영 인력	5명(비상근 1명, 상근 4명)	
운영 예산	2020년	100,000 천원
	2021년	150,000 천원
	2022년	250,000 천원
	계	500,000 천원
現) 수탁법인	(사)삼척 도시 재생 플랫폼	
	2020.6.2.~2023.6.3.	

○ 운영인력 현황

구 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현장 코디네이터
현원 (5명)	1명	1명	1명	2명

6.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

○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 : 2023.06.03.~2026.06.02.(3년)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 선정 일정

가. 성과평가 및 재계약(재위탁) 적정성 검토 : 2023.6월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재계약(재위탁)심의 : 2023.6월
다. 삼척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 2023.7월
라.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체결 : 2023.8월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격 여부 심사평가

○ 심사결과 : 현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 적합

○ 성과평가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붙임 자료 참고)

8. 소요 예산 및 산출 명세

○ 소요 예산 : 252,000 천원

(단위 : 천원)

항목	예산액	산출현황
계	252,000	
사무비	230,000	• 인건비 = 174,594
		• 업무추진비 = 31,000
		• 운영비 = 24,406
사업비	22,000	• 상인 역량 강화 교육비 등= 22,000

○ 연차별 운영지원예산 (추정)

(단위 : 천원)

계	2023	2024	2025	2026
852,000	252,000	252,000	252,000	96,000

9.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심사 결과

○ 지역 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10.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 적합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2023.06.27.)

11. 성과평가 결과

□ 평가개요

○ 평가일시 : 2023.5.26.(금) 13:00~16:00

○ 평가부서 :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 평가장소 :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 3층, 폐광지역사업단 사무실

○ 대상 기간 : 2020.6.3.~2023.6.2.(3년간)

○ 평가항목 : 6개 항목

1) 목표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2) 사업의 사회적 필요성
3) 사업 운영의 적정성 4) 예산집행률
5) 사업 목표의 달성도 6)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 평가 결과

1) 주민역량 강화 사업과 자체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험과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도계지역 주민단체 및 사회단체와의 연계와 협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2) 현장 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입증된 활동가들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 과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모델 구축**.

3) 코로나19로 인한 사업환경의 변화, 부족한 사업 기간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도시재생센터 중 가장 높은 사업비 집행률을 보일 정도로 성실하게 사업을 진행**.

4) 도시재생사업 중간 지원조직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켰으며, 자체 공모사업을 통한 시범사업의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5) 대학과의 협업이 2022년도에 이르러 본격화된 아쉬움이 있지만 대학과의 공존을 모색하였고 청년, 여성,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임**.

12. 참고 사항

○ 위치도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비용추계서 : 붙임 3
○ 위탁비 산출현황 : 붙임 4
○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 붙임 5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6
○ 심의의결서 : 붙임 7

【붙임1】

위 치 도

위성사진

전경 사진 1

전경 사진 2

전경 사진 3

【붙임2】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 삼척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② 시장은 도시 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 제1항 각호, 영 제15조 각호 및 이 조례 제18조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붙임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 등 관련 조문

○ 삼척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비용 산출현황 등)

위탁료	산출 기초	지원기관
252,000 천원/년	연도별 비용추계 참고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민간 위탁료	852,000	252,000	252,000	252,000	96,000

다. 재원 조달방안 : 국비 및 지방비(시비)

3. 제도개선 등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작성자	폐광지역사업단 폐광지역사업단장 신명석
연락처	(033)570-40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세 입		852,000	252,000	252,000	252,000	96,000
블랙다이아몬드 도계 (국고)/지방세		852,000	252,000	252,000	252,000	96,000
세 출		852,000	252,000	252,000	252,000	96,000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위탁료		852,000	252,000	252,000	252,000	96,000
재원 조달		852,000	252,000	252,000	252,000	96,000
의존 재원	소계	306,000	102,000	102,000	102,000	
	보조금	306,000	102,000	102,000	102,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계	546,000	150,000	150,000	150,000	96,000
	지방세	546,000	150,000	150,000	150,000	96,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 자본						
해외 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4】

삼척시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위탁비 산출현황

○ 위탁비 산출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단위 사업)	금액	상 세 내 역
계	252,000	
인건비	174,594	◦ 급여 146,604
		◦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12,291
		◦ 사회보험 부담금 15,699
운영비	39,406	◦ 사무실 임차료 6,000
		◦ 공공요금 3,600
		◦ 임차료(복사기・정수기 등) 2,315
		◦ 여비 교통비 3,600
		◦ 회계 감사비 4,000
		◦ 홈페이지 운영비 1,000
		◦ 화재보험료 150
		◦ 기타 운영비 3,741
		◦ 거점 공간 비품 구매(2개소) 10,000
		◦ 교육기자재 구매 5,000
시설비	16,000	◦ 시설물 유지보수비(현장지원센터) 3,000
		◦ 거점 공간 냉난방 설치(2개소) 5,000
		◦ 거점 공간 실내 인테리어 (2개소) 8,000
사업비	22,000	◦ 상인 역량 강화 교육사업 22,000

【붙임5】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재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보고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당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항

Ⅱ 위탁개요

❑ 위 탁 명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위　　치 : 도계읍 전두시장길 20, 2층(전체)

❑ 위탁기간 : 2020.6.3.~2023.6.2.(3년)

❑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1)]

1) 市의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수탁기관의 자기 소유 또는 수탁기관 명의로 임차한 시설을 활용하여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 탁 비 : 500백만원(2022년 말까지)

❑ 위탁업무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전반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지원
- 도계 권역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도계 권역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 도계 권역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
- 도계 권역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 도시 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 도시 재생과 관련한 홍보 등

Ⅲ 추진실적

❑ 도시 재생 주민 공모사업 진행

○ 동덕 분교(폐교) 환경정비사업, 피암터널을 활용한 지역 콘텐츠 개발 등

❑ 창업(동아리) 공모사업 진행

○ 관광해설사 양성, 바리스타 양성 과정 등

❑ 마을 관리 협동조합 교육 진행

○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과 기업가 정신 등

❑ 도시재생 직업 체험학교

○ 연탄 비누 만들기, 커피통 냅킨아트 만들기 등

❑ 블랙푸드 미식회 운영

○ 커피 및 디저트 음식 교육 실시

❑ 도시 재생대학 운영

○ 도계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 강화 등

❑ 도시 정원조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 텃밭 조성, 취약계층 집수리 및 돌봄 분야 공모사업, 동덕천 환경개선 등

Ⅳ 재계약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검토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제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책무가 있음. ▷ 삼척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시장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7조에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성공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검토항목	검토내용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사회·문화적 활력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 ▷ 석탄 도시에서 관광·문화·복지 도시로의 재창조라는 비전을 갖고 2020년도에 선정된 도계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이 2025년 폐광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음. ▷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에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 의견 수렴과 경제적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현장 전문가 육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적 동참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전문인력 활용 그리고 현재 수탁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검토항목	검토내용
3. 경제적 효율성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은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인력 채용 당시 관련분야 활동 경험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함. ☞전문성 분야 :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마을 중장기 발전계획 등 해당 분야 유경험자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해당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평가를 받음. ▷ 프로그램 운영·교육 등 사용자의 만족도 조사,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 집행 등 계량적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함.

검토항목	검토내용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회계 감사보고서를 통해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함.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 강원랜드에서 도시재생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폐광지역 시·군 중 정선군 사북·고한읍과 삼척시 도계읍 현장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월 3개 지구는 직영으로 운영 중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재생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에 도계 도시재생 조성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6】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재위탁)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심의개요

❑ 일시 : 2023. 06. 27.(화) 10:00 ~

❑ 대상 : 심의위원회 위원 6명

❑ 방법 : 서면심의

❑ 안건 :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재위탁)심의

Ⅱ 심의 결과

❑ 참석위원 : 6명(재적 위원 6명)

순번	분야	소속	성 명	비고
1	공무원	삼척시 경제과장	심우정	임명직
2	공무원	삼척시 전략사업과장	김 신	임명직
3	공무원	삼척시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임명직
4	시의원	삼척시의회 시의원	권정복	위촉직
5	대학교수	강원대 글로벌 인재 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왕재선	위촉직
6	기타	도계 여성단체 연합회 회장	민금식	위촉직

❑ 심의 결과

안건번호	의결 일자	안건명	의결
제2023-1호	2022.6.27.	도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재위탁) 심의	원안 가결 (적정)

❑ 의견 사항

순번	위원명	의견 내용	비고
1	민 금식	· 다문화사업의 활성화와 도계 캠퍼스와의 협업 등 지역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Ⅲ 향후 계획

❑ 삼척시의회 동의안 제출 : 2023.7월

❑ 위·수탁 계약체결 및 공증 : 2023.8월

❑ 위·수탁 계약체결 결과 보고 : 2023.8월

【붙임7】

심의의결서

[도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안건번호	제2023-1호
의결일자	2023. 06. 27.

안 건 명	도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재위탁)심의
의결사항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재계약(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바 적정한 것으로 의결함
요구부서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의 결		비 고
				가	부	
위 원	삼 척 시	심우정	심우정	○		
위 원	삼 척 시	김 신	김신	○		
위 원	삼 척 시	김현미	김현미	○		
위 원	삼척시의회	권정복	권정복	○		
위 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왕재선	왕재선	○		
위 원	도계여성단체연합회	민금식	민금식	○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7. .
제 출 자 : 삼 척 시 장

1. 제안이유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 경험과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지식이 탁월한 위탁법인(비영리)을 선정하여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차별화 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o 위탁사무명 :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

o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종류)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o 필요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으로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
-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돌봄 참여 활성화
- 책임 운영으로 사업의 연속성·안전성 확보 가능

o 위탁사무 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용아동 발굴 및 등록 관리에 대한 사항
- 종사자 채용 및 복무 관리에 대한 사항
-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관리
- 관리·운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민원 처리

○ 위탁시설 개요
- 소 재 지 :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14(근덕청소년문화의집)
- 규 모 : 지상 2층(85㎡)
- 지원시설 : 아동정원 25명/ 종사자2명(시설장 1, 생활복지사 1)
- 위 치 도

○ 민간위탁기간 : 2023. 9.~2028. 8.(5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붙임 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적정 승인
- 붙임 2, 붙임 3

3. 기대효과

가. 방과 후 아동의 돌봄 수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서비스 제공
나. 지역 내 한부모·맞벌이·다문화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보호로 방임 예방

4. 근거법규 : 붙임 4

붙임1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 762,990천원 (단위:천원)

구분			연도별					
			2023년 (9~12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8월)
계			138,866	131,598	131,598	141,598	131,598	87,732
지출	사무비	인건비	22,344	67,032	67,032	67,032	67,032	44,688
		운영비	10,520	16,560	16,560	16,560	16,560	11,040
	사업비	사업비	16,002	48,006	48,006	48,006	48,006	32,004
	재산조성비	시설비	90,000	-	-	10,000	-	-

붙임2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위원회 심의결과

『공립형근덕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관리번호	제2023 - 1호	심의·의결 연월일	2023. 7. 10.(월)
건 명	공립형근덕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심의		
의결주문	공립형근덕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민간위탁 심의 결과 본안가결(O), 본안부결( ), 수정가결( ) 하는 것으로 결정함.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가	부
심사위원	위원장	부시장	최종훈	최종훈	
	부위원장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백학영	백학영	
	위 원	삼척시의회 의원	정연철	정연철	
	위 원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성주	김성주	
	위 원	삼척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김은희	김은희	
	위 원	자치행정국장	최진헌		

관외출장

붙임3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록번호	복지정책과-2443
등록일자	2023. 07. 05.
결재일자	2023. 07. 05.
공개구분	부분공개(5)

드림스타트팀장	복지정책과장	자치행정국장	부시장	삼척시장	
협 조	주무관		총무과장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H2DREAM! 삼척

결 재 요 약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민간위탁 대상사무
- 대상시설 :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근덕면 삼척로 3681-14)
- 대상사무 :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
- 검토방법 : 부서 자체검토
- 검토사항 :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등 7개 항목을 통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결과 : 민간위탁 적정

○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제출 : 2023. 8월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수탁자 선정 : 2023. 8~9월

삼 척 시
(복 지 정 책 과)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보고임.

1 민간위탁 현황

□ 민간위탁 대상사무 현황

○ 위탁대상 :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3. 9.~2028. 8.(5년간)

○ 위탁업무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용 아동 발굴 및 등록 관리에 대한 사항
- 종사자 채용 및 복무 관리에 대한 사항
-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및 관리
- 관리·운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민원처리

○ 수탁자선정 :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14(근덕청소년문화의집)
- 현 황 : 지상 2층(85㎡)
- 위탁기간 : 2023. 9. ~ 2028. 8.
- 예 산 액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삼척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2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항목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행정재산 본연의 목적 · 용도(아동복지시설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볼 때 지역아동센터의 직접 운영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아동복지법」 제50조, 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함으로써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해당 법령을 근거로 각종 복지시책의 추진 용이
3.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및 전문성 결여에 따른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공개모집을 통한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으로 돌봄 및 프로그램 전문성 확보,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도모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연간 사업계획, 보조금 집행, 지역사회 아동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및 지역사회연계 등 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정산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여 성과 측정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위탁상황을 확인 · 조사하고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아 성과를 측정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2023.7.1. 근덕지역아동센터의 폐업으로 지역내 아동돌봄 시설이 없어 방과 후 아동의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욕구가 강한 지역

3 검토 결과

□ 2023. 9. 설치·개소 예정인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는 법령에 근거하여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수탁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수탁자는 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삼척시는 그에 대한 관리·조사 및 감독의 권한을 가지게 됨.

□ 수탁자가 「공립형 근덕지역아동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음.

□ 아동복지분야 운영의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은 절감 가능하므로 민간위탁이 적정함.

4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2023. 8월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수탁자 선정 : 2023.8.~9월

□ 민간위탁 계약체결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 : 2023. 9월

□ 지역아동센터 개소 및 운영 : 2023. 9월

※참고 삼척시 지역아동센터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센터장	정원	설치일
	계	10개소			344	
1	도계지역아동센터	도계읍 도계느티로3길 9	이이순	김현미	31	2005.01.10
2	홍전지역아동센터	도계읍 홍전안길 17-12	김도영	오희정	35	2005.02.20.
3	원덕지역아동센터	원덕읍 호산3길 102	서승원	서승원	33	2005.12.29.
4	꿈을이루는지역아동센터	하장면 하장길 62-37	김재평	박정승	29	2009.02.13.
5	나무심는지역아동센터	하장면 별문재로 1009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장동의	19	2011.09.26.
6	반석지역아동센터	남양길 14-22	이승재	이승재	33	2004.10.04.
7	삼척지역아동센터	중앙로 171-38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김형진	33	2004.11.17
8	삼척꿈망울지역아동센터	남양안길 53	최인숙	박지현	33	2007.08.29.
9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정상안1길 14-26	김기주	이자숙	35	2009.07.31.
10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동해대로 4122-18	방일훈	조옥분	33	2014.04.15.

붙임4 근거 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1. 12. 21.>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삼척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형 위탁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재계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신설 2022.2.25.>
10. 제1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1.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동의에 필요한 사항